

참 고

자치법규 입법계획(방침) 수립 예시

		시 민			
		주무관	00팀장	00과장	실·본부·국장
문서번호					↓
결재일자		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팀장 → 법무담당관, 예산담당관(소관 팀장) 협조			제정·폐지 : 시장 또는 부시장 개정 : 부시장 또는 실·본부·국장
공개여부					
방침번호					

**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
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계획**

0000. 00.

기 획 조 정 실
(법무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약 배 자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성 별 분 리 통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와이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, 플랜, 앵커시설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지 속 가 능 성	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
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계획

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·표현을 정비하는 등 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□ 추진배경

- 조문의 체계를 실제 **법제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다시 편제**하고,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개정 필요
- 현행 **‘입안심사기준표’**는 시민의 권리·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**‘조례’보다는 ‘규칙’에서 규정함이 합리적**
 - ※ ‘입안심사기준표’ : 자치법규의 필요성,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 입법 과정에서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(현행 111개 항목)
- **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** 등에 따라 **용어·표현을 재정비**

□ 주요 개정내용

- 목적/정의 규정 명료화 (안 제1조, 제2조)
 - 조례의 목적을 ‘서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’과 ‘시민의 권익 증진’으로 명확히 하고(안 제1조), 정의 규정에 ‘법령’을 추가함(안 제2조)
- 조문의 체계(순서) 재정리 (안 제4조 ~ 제11조)

현행 조례	전부개정 조례
제2장 입법예고	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
입법예고(제4조~제8조)	입법안 작성 (제4조)
공청회(제9조)	사전 협의 (제5조)
협의 등(제10조)	입법예고(제6조~제9조)
입법안 작성(제11조)	공청회(제10조)
입법안 심사(제12조)	입법안 심사(제11조)
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(제13조)	삭제 ※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

- 조례에는 ‘입법안 작성 유의사항’을 신설하고, ‘입안심사기준표’ 등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으로 위임 (안 제4조, 제11조)
 - ‘입안심사기준표’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실무의 기준이 되는 점검표 (체크리스트)로서 시민의 권리·의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
 - 따라서, ‘입안심사기준표’는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시,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이 가능한 ‘규칙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함
 - ※ 법제처의 경우에도 시행규칙(총리령)에서 ‘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’을 규정하고 있음 (「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」 제2조)
 - 다만, 조례에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규정하고, 입안심사기준표 관련 사항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관

- 한자 병기, 상위법령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등에 따라 용어·표현 재정비 (안 제6조, 제4조제2항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~제17조 등)
 -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자 병기 : 전문(前文), 연서(連署)
 - 「행정절차법」,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의 기술방식이나 표현에 맞춰 조문의 문구·체계 정리
 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·표현 재정비 등

□ 추진일정

- 조례안 입법예고(20일간) : '17. 11. 23.(목) ~ 12.13.(수)
-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: '17. 11. 20.(목) ~ 12.11.(월)
-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'17. 12. 28.(목)
- 조례안 시의회 제출 : '18. 1월(예정)
- 시의회 의결 및 공포 : '18. 3월(예정)

〈 붙임 〉 1.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입법예고문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0000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개정지시문 제목 : 서울특별시 0000조례(규칙) 일부개정조례(규칙)안
※ (주의) 일부개정조례(규칙)안(○), 일부√개정√조례안(X, 피어쓰지 않음)

서울특별시 0000조례 일부(전부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개정문 첫줄에 '0000조례 일부(전부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'로 작성

제명 “서울특별시 0000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△△△△조례”로 한다.

조례의 제목 변경 : 제명 “00000000 조례”를 “△△△△△△△ 조례”로 한다.
※ (주의) 변경할 부분에 큰따옴표(" ") 표시, 제명은 일부분이 아닌 제명 전체를 표시

제2조제1항 중 “000”를 “△△△△△”로, “□□”를 “◇◇”로 한다.

조문 중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▶ 제○조제○항제○호 중 “000”을 “△△△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*****”을 “○○○○○○○”로 한다.

- 각 호가 있는 조문의 본문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
 - ▶ 제○조제○항 **각 호 외의 부분 중** “000”을 “△△△”로 한다.
 - 한 조항이 본문+단서 또는 전단+후단으로 구성된 경우 변경하는 부분을 명시
 - ▶ 제○조제○항 **본문(단서) 중** “000”을 “△△△”로 한다.
- ※ 단서 : 조문의 구조가 "○○○○한다. 다만, ~~~으로 한다"일 때 '다만, ~~~으로 한다' 부분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~ ~ ~ ~ ~ .

항이 없는 조문에 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을 추가

▶ 제○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○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△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---- (신설할 조문 기재) -----

<예시>

현행조문 - 제15조(공포방법)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제목 제목 외의 부분

개정문 -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보의 게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」에 따른다.

개정 후 ⇒ 제15조(공포방법) ①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② 시보의 게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」에 따른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~ ~ ~ ~ ~ .

조문에 (각 호가 있는 경우)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경우

▶ 제○조제○항 (각 호 외의 부분에) 단서(후단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(이 경우), ~ ~ ~ ~ ~ .

<예시>

현행조문 - 제17조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9.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쿠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

개정문 - 제17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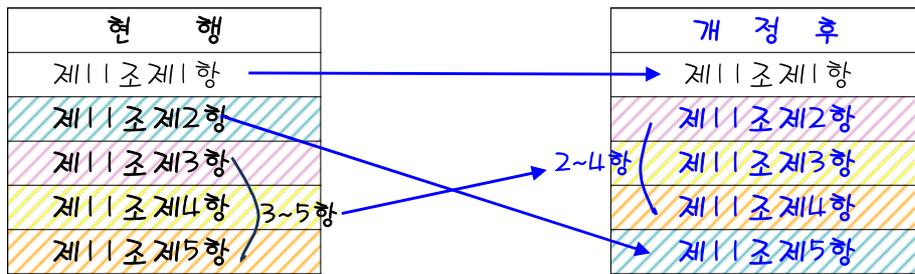
개정 후 ⇒ 제17조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9.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쿠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.

제11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조문의 위치를 이동할 하는 경우

▶ 제○조제○항을 제○항으로 한다.

〈예시〉 개정문 - 제11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조문을 (여러 개) 삭제하는 경우

▶ 제○조제○항을 (제○조제○항과 제△조제△항을 각각) 삭제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1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총계	18,144	4,409	300	7,964	5,321	150
----	--------	-------	-----	-------	-------	-----

별표의 표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

▶ 본문을 개정문의 끝에 “별표○ 중 ○○란을 다음과 같이한다”

----- (개정할 표의 내용) -----

※ 주의사항 : 개정할 내용이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음

〈잘못된 사례〉

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계	18,144	4,410	300	7,964	5,320	150

→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삭제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2는 부칙 뒤, 신·구조문대비표 앞에 붙임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에 시행일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일부터 20일 후부터 효력발생

별표 2

→ 별지로 붙이는 경우에는 부칙 뒤, 신·구조문대비표 앞에 위치

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(제○조 관련)

제목을 작성하고 밑줄 표시.

제목 옆에 관련 조항 기재

주관국(과)	시 설 명	위 치	주요기능

신·구조문대비표

일부개정인 경우에만
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0000조례	서울특별시 △△△△조례
<p>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제목 기재 (제목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)</p>	
<p>제2조(~~~~) ~~~~~~ ~~~~~000를 ~~~~~~ ~~~~~□□에 ~~~~~~ ~~~~~ 변경하는 부분은 밑줄 표시</p>	<p>제2조(목적) ----- -----△△△를----- -----◇◇에----- ----- 변경이 없는 부분은 -----으로 표시</p>
<p>제3조(00)① ~~~~~~ ~~~~~. *****.</p>	<p>제3조(00) ----- -----. ○○○○○○.</p>
<p>1.~3.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변경이 없는 조항은 조문 생략 후 개정안 현행과 같음으로 작성</p>	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*****) ~~~~~~ ~~~~~.</p> <p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top: 10px;"><신설></p> <p>현행에 없는 조문이 신설되는 경우 현행에 <신설>로 기재</p>	<p>제4조(*****)①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.</p> <p>② ~~~~~~ ~~~~~ ~~~~~.</p>

제5조(@@@)~~~~~
~~~~~. <단서 신설>

제11조(☆☆)①(생략)

②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.

③ ~ ⑤ (생략)

제12조(○○)①~~~~~

~~~~~.

②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

☆☆☆☆☆☆☆☆.

제13조(△△)*****

*****.

제5조(@@@)-----
----- . 다만, ~~~

제11조(☆☆)①(현행과 같음)

⑤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<삭제> 해당조문 전체 삭제

<삭제> 해당조문 전체 삭제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에는 부칙, 별표·서식의 개정사항은 작성하지 않음

◀ 법제처의 ‘법령안 편집기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정안 작성 ▶

- 정부입법 지원센터(<https://www.lawmaking.go.kr>)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
- 개정본문을 작성하면 개정문, 신·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

현행 조문을 수정하고
"실행"버튼을 누르면
개정문, 신·구조문대비표
자동 생성

